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91

발의연월일: 2021. 4. 2.

발 의 자:신영대·주철현·강선우

양정숙ㆍ허 영ㆍ위성곤

이개호 • 이상직 • 오영훈

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해당 지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환 경에 차이가 크고,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도 제약받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제6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을 "관할"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보 또는"을 "확보 및 운행 또는"으로,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	②
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	
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u>설치</u>	설치
<u>할 수 있다</u> .	<u>하여야 한다</u>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3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관할</u>
<u>관할</u>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	
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	
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	
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6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u>확보 또</u>	<u>확보</u>
<u>는</u>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u> 및 운행 또는</u>
의 <u>설치</u> 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	<u>설치·운영</u>
부를 <u>지원할 수 있다</u> .	<u>지원하여야 한다</u>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